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인점포”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가맹점 인정기준)”을 “(체인점포 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을 “체인점포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 직영점형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